

건축허가 제한(연장) 공고

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7-61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,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, 「건축법」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(연장)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1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1. 건축허가 등 제한

가. 제한목적: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,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,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(연장)하고자 함

나. 제한근거: 「건축법」 제18조제2항 및 제4항

다. 제한기간

1) 기존: 2021. 6. 17. ~ 2023. 6. 16.

2) 연장: 2023. 6. 17. ~ 2024. 6. 16.

※ 단,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

라. 제한지역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7-61번지 일대

마. 제한대상

1) 제한대상

가)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

나)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

다)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(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)

라)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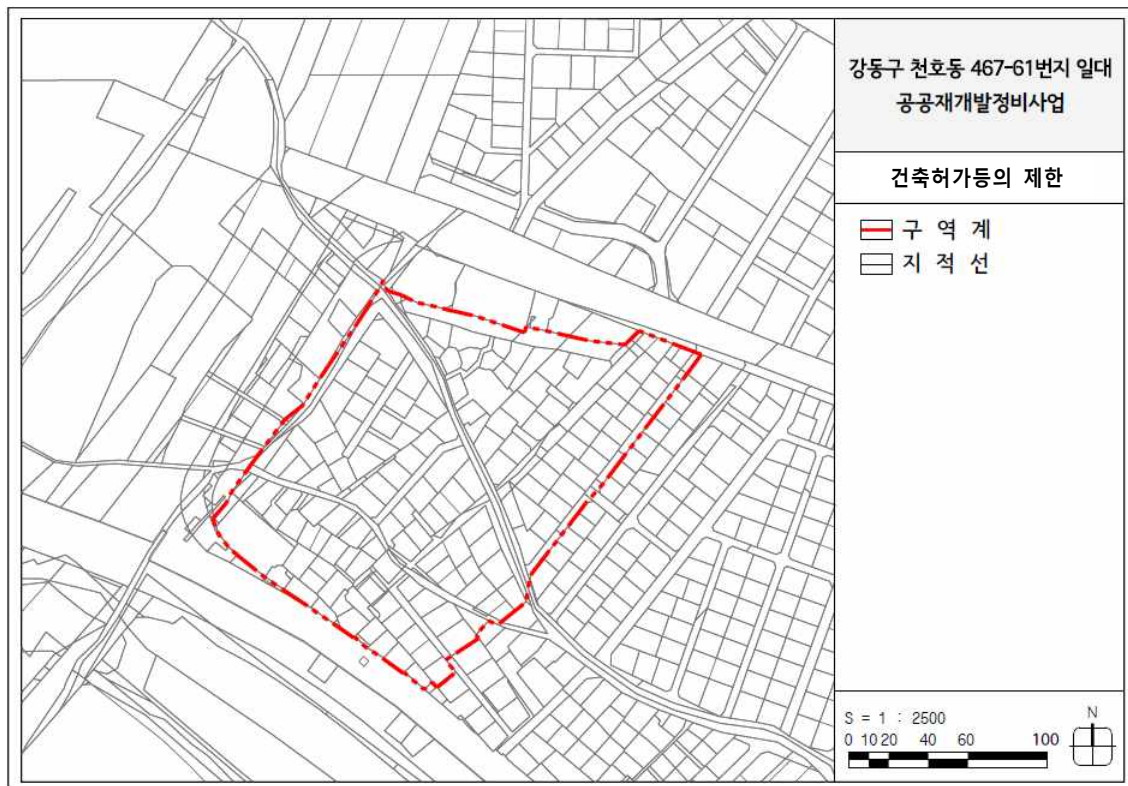
마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
2) 제한 제외 대상

- 가)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(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)
- 나)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
- 다) 「건축법」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
- 라) 「재난안전관리기본법」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

2. 지형도면

○ 천호A1-1 (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7-61번지 일대)



※ 이전 고시된 도면과 같음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68호(2021. 6. 17.) 참고]
· 고시문 위치: 서울시보(<https://event.seoul.go.kr/seoulsibo/list.do>)

3. 안내사항
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(☎ 02-3425-59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